

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

신청인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)		생년월일(법인은 법인등록번호)
	제조(영업)소의 명칭		전화번호
	제조(영업)소의 소재지(우편번호:)		
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(제품명, 품목명, 모델명)		의료제품의 분류	☐ 의약품 ☐ 의약외품 ☐ 의료기기
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(傷害)		주성분 또는 구성 성분 (*의약품등만 해당)	
검토 결과			
결과 통보 회차			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